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Vitalizing the Local Community Board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강 창 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주저자)

윤 원 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정 원 희(수원과학대학 겸임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Won-Soo Yoon/Chang-Min Kang/Won-Hee Chung

Local Community Board was introduced to enhance self-governing capacity and autonomy of local residents. Its history is still short but Local Community Board system may not yet become established. Local Community Boards have deliberation, voting, and implementation functions. Those functions, however, are only related to operate or manage local community centers that have mainly learning and leisure programs. These activities may be far away from its intended goals of helping local autonom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Local Community Board. Wh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unched in July 2006, its autonomous political units of Shi, Eup, and Myun were discarded. Thus, the Province has been feeling to fin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to support local autonomy.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find ways to revitalize Local Community Boards by surveying the awareness on the Board of the 119 Board members. The survey results show practical implications to revitalize Local Community Boards. Above all, the results suggest to reform the procedures to compose the Board members and to develop strategies for the Board activities and programs.

주제어: 주민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식조사

Key Words: Local Community Boar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wareness survey

I. 서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실시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2000년부터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권위주의적 정치와 행정 문화를 극복하고 주민의 주권의식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의식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개행정과 참여행정을 이루고 주민공동의 기초적 활동공간인 마을을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강기정, 2001: 16-18).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와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의 그 권한이 얼마나 지방에 이양되었는가에 달려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인데, 오늘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제도적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동사무소의 기능축소로 인한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지난 1999년 7월부터 전국의 278개 동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참여의 장으로 제도화한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 주도의 주민자치센터는 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주민참여의 정도가 낮은 것은 물론 그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실질적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최진학·김성현·홍준현, 2006: 2).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높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지만, 제도와 운영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7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제도이며,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제도이지만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긍정적 가능성들이 발견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큰 한국의 현실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밀착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많은

실천과 토의를 거쳐 계속 변화·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경우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자치단체였던 시와 읍면의 단위가 행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사를 대변할 의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의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다른 지방정부와 다른 위상을 점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I.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적 논의

1.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1) 법제도적 근거

(1) 상위법령의 검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따르면 사무구분 란에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정도이다. 즉,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시·군·구 자치구의 사무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시·도의 사무라는 사무구분의 근거만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두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 조례준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적극 참여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였다. 읍·면·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관할구역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들의 주민의견수렴, 각종 교육·연수에의 적극 참여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자치입법(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타시도의 조

례와는 권한과 기능에 차별이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성이 있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표 81> 제주특별자치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비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상위법령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법령상의 내용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포괄적 언급 조례에 구체적 내용 제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위상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거하여 제도운영의 근거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비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준칙을 비교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심의기능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결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표 2> 참조). 또한 심의사항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의 조례준칙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예산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운영

(1) 위원선정의 방식 및 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방식은 선출, 위촉, 파견방식 등으로 구분된다(강기정, 2001: 31-33). 첫째, 위촉방식은 정부위원회 구성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행정기관의 장이 관료제의 계층제가 가지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행정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정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임무를 맡겨 대안을 내놓고자 하는 방식이며, 대부분 정부위원회가 위촉방식의 위원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다. 대체적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동원적·소극적 참여의 성격을 가진다.

<표 2>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의 비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행정안전부 조례 준칙
기능	심의사항에 대해 심의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
심의 사항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읍부즈맨 역할 부여 주민의 이해 조정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 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둘째, 공동의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견방식이다. 여러 집단이나 단체에서 대표자를 파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며, 문제 해결의 합의와 도출을 중요한 운영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노사정 위원회 등이 있다.

셋째, 위원을 직·간접적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선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 부여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 성격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이다.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1명은 여성)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원 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 포함)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며, 임기는 2년으로 1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리·통장협의회장, 7명 이내의 읍·면·동장이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읍·면·동장은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정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방식은 행정에 의한 운영과 자율적 운영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정에 의한 운영은 회의 운영 시 제안되는 문제나 그 해결점을 대체로 행정기관의 직접적 도움, 지시, 보고 등에 의해 해결하며, 안건에 대한 추인 또는 동의 형태로 운영된다. 의사결정에는 행정담당자나 위원장의 결정권이 강하며,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동원적 참여 또는 행정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참여하는 공동 협력적 참여방식을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자문기구(advisory organization or committee)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 목적에 따라 지위 및 권한이 불명확하다. 이유는 기관장의 위원회에 인식부족과 내·외부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문제이다.

둘째, 자율적 운영은 위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방식으로 위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부각될 수 있는 운영방식이다. 위원들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긍심이 높으며, 파견방식으로 구성된 위원회나 선출방식에 의한 위원회 운영방식이 해당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의 선행연구 검토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방행정개혁과 함께 추진된 읍·면·동의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학문적으로나 실생활에 있어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대체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

(community center)나 일본의 공민관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유낙근, 2004: 7-9).

최근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커뮤니티 이론(community theory)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는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최진학, 2006; 김정현·박명호, 2006), 주민자치센터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고 있다(이경국·최주영·이정호, 2009; 김종수·김태영, 2010; 김민주, 2009; 이양수, 2007; 곽현근, 2009, 표갑수·조보행, 2009). 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학위논문(박종윤, 2009; 유혜경, 2008; 박용, 2008)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념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Ⅲ. 주민자치위원 인식조사

1. 조사설계

1) 조사설계의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의 중심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정립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0년 6월 14일부터 동년 7월 6일까지 주민자치위원 119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응답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14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설문문항의 성격에 따라 빈도분석 및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문항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3점에 해당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4~5점에 해당하는 긍정적 인식과 1~2점에 해당하는 부정적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대상자의 인식의 분포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일반적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도, 자치역량 및 공동체 형성의 도움 정도, 기능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포함 대상 등이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주민자치센

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 주민 선호 및 욕구 수렴과 노력정도, 사적이익 추구, 지역 활동 참여정도, 임무와 업무 규정 정도, 주민의견 반영 정도,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활동실적 보고서 공개여부, 주민 불만 개선 노력, 타 지역과의 정보 공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위원 위촉방법의 적절성, 구성원의 수, 여성 할당제 도입여부, 임기 제한에 대한 적절성,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법, 권한의 한계, 바람직한 목적과 역할 및 개선내용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주민자치위원 인식 분석 결과

1) 인구 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57명(47.9%), 40대 33명(27.7%), 60세 이상 26명(21.8%), 30대 3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1명(68.1%), 여성 38명(31.9%)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45명(37.8%), 전문대 졸업 33명(27.7%), 대학 졸업 29명(24.4%), 중졸이하 7명(5.9%),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5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 56명(47.1%), 서귀포시 동지역 25명(21.0%), 제주시 읍면지역 24명(20.2%), 서귀포시 읍면지역 14명(11.8%)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30년 이상 46명(38.7%), 20~25년 미만 21명(17.6%), 25~30년 미만 20명(16.8%), 10~15년 미만 16명(13.4%), 5~10년 미만 8명(6.7%), 15~20년 미만 5명(4.2%), 1~5년 미만 2명(1.7%), 1년 미만 1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34명(28.6%), 농·수·축산업 22명(18.5%), 감귤 21명(17.6%), 전업주부 12명(10.1%), 은퇴 및 무직 7명(5.9%), 판매·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자유전문직 각각 6명(5.0%), 기타 5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주민자치위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연령	30대	3	2.5	거주기간	1년 미만	1	0.8
	40대	33	27.7		1~5년 미만	2	1.7
	50대	57	47.9		5~10년 미만	8	6.7
	60세 이상	26	21.8		10~15년 미만	16	13.4
	합계	119	100.0		15~20년 미만	5	4.2
성별	남성	81	68.1		20~25년 미만	21	17.6
	여성	38	31.9		25~30년 미만	20	16.8
	합계	119	100.0		30년 이상	46	38.7
학력	중졸이하	7	5.9		합계	119	100.0
	고졸	45	37.8		직업	감공	21
	전문대 졸업	33	27.7	농·수·축산업		22	18.5
	대학 졸업	29	24.4	판매·서비스직		6	5.0
	대학원 졸업	5	4.2	사무·관리직		6	5.0
	합계	119	100.0	자유전문직		6	5.0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56	47.1	자영업		34	28.6
	제주시 읍면지역	24	20.2	전업주부		12	10.1
	서귀포시 동지역	25	21.0	은퇴 및 무직		7	5.9
	서귀포시 읍면지역	14	11.8	기타		5	4.2
	합계	119	100.0	합계		119	100.0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과 자율성’과 ‘사회 각층의 전문성’이 각각 32명(26.9%), ‘실질적 봉사활동 의지와 경험자’ 29명(24.4%), ‘주민대표성’ 23명(19.3%), 기타 1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의 중요한 인선기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책임감과 자율성	32	26.9	봉사활동의 의지와 경험	29	24.4
주민대표성	23	19.3	기타	1	0.8
사회 각층의 전문성	32	26.9	무응답	2	1.7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선정 방법의 민주성에 대하여 ‘그렇다’ 83명(69.7%), ‘보통이다’ 27명(22.7%), ‘그렇지 않다’ 8명(6.7%)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선정 방법이 민주적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선정 방법의 민주성 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그렇다	65	54.6
그렇지 않다	7	5.9	매우 그렇다	18	15.1
보통이다	27	22.7	무응답	1	0.8
			합계	119	100.0

(2)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의 행정기관에 반영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 48명(40.3%), ‘보통이다’ 45명(37.8%), ‘그렇지 않다’ 26명(21.9%)으로 건의사항의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6>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의 반영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4	3.4	그렇다	45	37.8
그렇지 않다	22	18.5	매우 그렇다	3	2.5
보통이다	45	37.8	합계	119	100.0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조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 57명(45.9%), ‘보통이다’ 43명(36.1%), ‘그렇지 않다’ 19명(15.9%)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조 및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7> 읍·면·동사무소의 보조·지원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그렇지 않다	16	13.4	그렇지 않다	16	13.4
보통이다	43	36.1	보통이다	43	36.1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기능’ 96명(80.7%), ‘문화서비스 기능’ 9명(7.6%), ‘사회교육 기능’ 8명(6.7%), ‘동사무소 지원 및 보조 기능’ 4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주민자치 기능	96	80.7	동사무소 지원/보조 기능	4	3.4
문화서비스 기능	9	7.6	무응답	2	1.7
사회교육 기능	8	6.7	합계	119	100.0

(3) 자치위원의 활동가 역할에 대한 질문

주민자치위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동참 한다’ 49명(41.2%),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구심체 역할을 한다’ 43명(36.1%), ‘주민자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13명(10.9%),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11명(9.2%), ‘지역의 발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 한다’ 3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주민자치위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11	9.2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동참	49	41.2
지역주민 대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위하여 구심체 역할	43	36.1
지역의 발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	3	2.5
주민자체센터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의 주체	13	10.9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발한 정도는 ‘보통이다’ 53명(44.5%), ‘그렇다’ 48명(40.3%), ‘그렇지 않다’ 17명(14.3%)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발한 정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그렇지 않다	17	14.3	매우 그렇다	6	5.0
보통이다	53	44.5	무응답	1	0.8
그렇다	42	35.3	합계	119	100.0

자치위원회에 참여결과에 따라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그렇다’ 64명(53.8%), ‘보통이다’ 41명(34.5%), ‘그렇지 않다’ 13명(10.9%)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1> 자치위원회에 참여결과 보람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그렇다	56	47.1
그렇지 않다	12	10.1	매우 그렇다	8	6.7
보통이다	41	34.5	무응답	1	0.8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의 적절한 임기에 대하여 ‘임기 2년, 연임가능’ 62명(52.1%), ‘임기 3년, 연임가능’ 17명(14.3%), ‘현재 조례 유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각각 15명(12.6%), ‘임기 4년, 연임가능’ 9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임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74.0%로 조사되었으며, 임기에 대해서는 64.7%가 2년의 임기를 선택하였다.

<표 12>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 임기 적절성

구분		빈도(명)	비율(%)
임기	연임 여부		
현재 조례 유지		15	12.6
임기 2년	연임 가능	62	52.1
임기 3년	연임 가능	17	14.3
임기 4년	연임 가능	9	7.6
자율 결정		15	12.6
무응답		1	0.8
합계		119	100.0

(4)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할 때 민주적인지의 여부는 ‘그렇다’ 73명(61.4%), ‘보통이다’ 29명(24.4%), ‘그렇지 않다’ 17명(14.3%)으로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할 때 민주적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 시 민주적인지 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그렇다	59	49.6
그렇지 않다	14	11.8	매우 그렇다	14	11.8
보통이다	29	24.4	합계	119	100.0

위원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이유는 자치위원회 관심 부족 6명(35.3%), 주민자치위원의 자체역량 부족 5명(29.4%), 동사무소의 간섭 3명(17.6%), 주민의 관심 부족 2명(11.8%), 지방의회의 간섭 1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이유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동사무소의 간섭	3	17.6	위원 자체역량 부족	5	29.4
지방의회의 간섭	1	5.9	주민의 관심 부족	2	11.8
자치위원회 관심 부족	6	35.3	합계	17	100.0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이 참여로 활발한 정도는 ‘그렇다’ 47명(39.5%), ‘보통이다’ 45명(37.8%), ‘그렇지 않다’ 23명(19.3%)으로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이 참여로 활발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위원회 결정 안건에 대한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의 참여정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그렇다	45	37.8
그렇지 않다	21	17.6	매우 그렇다	2	1.7
보통이다	45	37.8	무응답	4	3.4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 71명(59.6%), ‘보통이다’ 40명(33.6%), ‘그렇지 않다’ 6명(5.0%)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도움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그렇다	65	54.6
그렇지 않다	5	4.2	매우 그렇다	6	5.0
보통이다	40	33.6	무응답	2	1.7
			합계	119	100.0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재원 확보 51명(42.9%), 자치위원의 능력부족 35명(29.4%), 프로그램 개발 21명(17.6%),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 6명(5.0%), 기타 3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강사/자원봉사자 활동	6	5.0	운영재원 확보	51	42.9
자치위원의 능력부족	35	29.4	기타	3	2.5
프로그램 개발	21	17.6	무응답	3	2.5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는 ‘그렇지 않다’ 49명(41.2%), ‘보통이다’ 36명(30.3%), ‘그렇다’ 32명(26.9%)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8	6.7	그렇다	29	24.4
그렇지 않다	41	34.5	매우 그렇다	3	2.5
보통이다	36	30.3	무응답	2	1.7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회 임무가 본인의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관성 정도는 ‘그렇지 않다’ 52명(43.7%), ‘그렇다’ 35명(29.4%), ‘보통이다’ 29명(24.4%)으로 본인의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관성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지식과 연관성 정도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7	5.9	그렇다	33	27.7
그렇지 않다	45	37.8	매우 그렇다	2	1.7
보통이다	29	24.4	무응답	3	2.5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체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렇다’ 49명(41.2%), ‘보통이다’ 47명(39.5%), ‘그렇지 않다’ 20명(16.8%)으로 대체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 주민자치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여부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전혀 그렇지 않다	1	0.8
그렇지 않다	19	16.0	그렇지 않다	19	16.0
보통이다	47	39.5	보통이다	47	39.5
			합계	119	100.0

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언론계, 문화/예술 등)’ 57명(47.9%), ‘도의회 의원’ 34명(28.6%), ‘통장 및 담당 공무원’ 22명(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대상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통장 및 담당 공무원	22	18.5	기타	2	1.7
도의회 의원	34	28.6	무응답	4	3.4
각 분야 전문가	57	47.9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할 때 좋은 방법은 ‘위원회에서 선출’ 89명(74.8%), ‘동장이 추천’ 15명(12.6%), ‘지역주민이 선출’ 11명(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할 때 좋은 방법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위원회에서 선출	89	74.8	기타	1	0.8
동장이 추천	15	12.6	무응답	3	2.5
지역주민이 선출	11	9.2	합계	119	100.0

주민자치위원이 생각하는 위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책임감과 자율성, 사회 각층의 전문성(각각 26.9%)으로 응답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 성실성과 전문성, 대표성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40.3%이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업무 보조지원에 대해서도 45.9%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주민자치위원이 판단하는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41.2%)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구심점 역할(36.1%)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기능을 수행(80.7%)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영재원의 확보(42.9%)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위원(29.4%)을 선정하였다. 연계하여 본인의 지식분야와 전문성이 연계되는지에 대하여 43.7%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인력은 각 분야의 전문가(47.9%)와 도의회 의원(28.6%)이라고 응답하여 전문성이 중요한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1. 주민자치위원 구성 개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전문성과 대표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의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운영주체의 육성과 교육이 요구된다.

1) 운영주체에 대한 재검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주민자치·시민교육·문화·지역복지·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동장은 운영주체가 아니라 행정적·실무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행정주도형이나 민간주도형의 주민참여 모형의 경우 권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의 발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 권한관계를 형성하는 민관협동형의 모형을 구성해야 하며, 이후 자생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단계적 로드맵(road-map)을 구성해야 한다.

2)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보장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공개모집을 전면화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결과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도 전문성이 위원선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원장 선출시 74.8%는 위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위원선정과 위원장 선출에 있어 편의를 위해서는 다양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으로 구성에 관여하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제도 정규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가진 생활상의 관심을 참여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연도별 목표비율(예를 들어 3년 내에 40% 등)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장애인, 빈곤층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4) 운영주체의 육성과 교육

주민자율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운영경험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또는 커뮤니티 과정이나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 한 사람에게 전담실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전담실무자가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담실무자가 기존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주민자치

센터 이외의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하게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어 지역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결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소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유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개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운영개방과 참여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활동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홍보 및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1) 운영 개방과 참여 활성화 유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개방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할 필요도 있고, 회의 자료나 회의록 등을 인터넷을 통해 수시 공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개발, 위원회 사업,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조례상의 심의사항)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공개제안이나 의견을 받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활동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하며, 타 지역 성공 사례의 단순한 적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실패가능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운영세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계층적 위상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조례준칙보다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3) 자치활동 영역의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은 단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주민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주요활동을 현안문제의 해결과 지역공동체 형성이 중심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민의 경우 예산에 대한 감독권의 부여와 현재의 사무심의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홍보와 주민참여 전략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의 관보나 인쇄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 정도를 넘어서 홍보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방안과 관련한 홍보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홍보방법으로는 형식적으로 인쇄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 주민자치위원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주민욕구설문조사, 명칭, 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공모, 작품전시회 등 창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동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마을신문 편집진을 꾸리고 자율적으로 발행하게 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운영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개념화를 시도한 결과 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자문위원회의 성격보다는 근린 의회적 성격을 지닌 의결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직 제도가 도입 되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가 2008년 제정된 이후 정착화 되지 못하고 있어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운영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 등 사

회적 약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성된 위원에 대한 육성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홍보와 주민참여를 통한 정체성과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영개방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가 기초가 되어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위상 및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는 의결권한의 전면적인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심의기능 이상의 부분적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있지만,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기관과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다 나아가 근린의회나 자치회로 전환하여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의결기능을 활용하여 지방의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여타 제도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장제상 외. (2007). 「정부위원회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구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 강황선. (2001). 로컬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논문집).
- 경기개발연구원. (2002). 「주민자치센터운영모델/프로그램개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석준. (2002). 한국 국가창조와 뉴 거버넌스: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학회보」, 34(2): 1-21.
- 김정현·박명호. (2006). 지역복지적 관점에서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재정립 모색 : 대구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6(2): 1-29.
- 김종성·신원득. (200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2(2): 195-216.
- 김필두. (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 하계 학술대회」, 1-15.
- 남궁근. (2003). 참여 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 학회 기획세미나 발제 논문」.
- 류재현. (2002). 지방정부 거버넌스형 시장리더십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43-63.
- 소순창. (2004). 한국로컬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정부, 시민, 그리고 기업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안성수·하종근. (2006).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1): 3-30.
- 염원일·설성현. (2003). 로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 광주광역시 북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오재일. (2004).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18(1): 3-19.
- 유낙근. (2004).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 측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임승빈. (1997), 일본지역사회에 있어서 전통적 주민조직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12(2): 66-67.
- 조문부. (2001),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이론, 「자치행정」, 157: 34-38.
- 최근열. (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 대구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0(2): 135-165.
- 최진학. (2006). 「로컬거버넌스 구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안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종수·김태영. (2010). 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센터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3(1): 47-8.
- 이양수. (2007).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도시·농촌 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2): 47-63.
- 박순애·박재현. (2010).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투표행태 : 관악구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321-344.
- 박남희·최재순. (2009). 주민자치센터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1): 123-132.
-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보」, 19(1): 145-170.
- 이미숙·서귀숙. (2009). 서울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저층 고밀도 지역의 사례 중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0(2): 59-68.
- 표갑수·조보행. (2009).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과 활성화 방안: 청주시 흥덕구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1-27.

- Amin, A & Hausner, J. (1997). *Beyond Market and Hierarchy: Interactive Governance and Social Complexity*. Lyme, USA: Edwar Elgar.
- Hallman, Howard W. (1987). *Neighborhoods*. London: Sage.
- Hillery, G. A. jr.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 Jessop, B. (2000). Governance Failure, in G. Stoker(ed). *The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11-3. St. Martin Press.

- Lasker, R. D., Weiss, E. S. & Miller, R. (2001). Partnership Synergy : A practical framework for studying and strengthening the collaborative advantage. *The Milbank Quarterly*. 79(2).
- Lynn, J., Heinrich, C. and Hill, C. (2001). *Improving Governance: A New Logic for Empirical Research*. Washington. D. C. : Geotown University Press.
- Maciver, R. M. (1987).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Macmillan and Co., Ltd.

접수일(2010년 10월 23일)

수정일자(2010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 21일)